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의안
번호

11-03671

이효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진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본 개정안은 임신 중인 시민이 도시공원을 보다 편안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제20조제1항에 제17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 현행 조례는 6세 미만 및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동이 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체적 부담이 크고 야외 활동과 정서적 안정이 특히 권장되는 임신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신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도시공원을 이용하고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이 임신부의 도시공원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임신부 예우 정책과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